

# 순천대학교 사회봉사단운영규정

제정 1999. 4. 17

개정 2018. 9. 12.

개정 2019. 3. 2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순천대학교사회봉사단(이하 “사회봉사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사회봉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회봉사 활동 계획 수립
2.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·운영
3. 사회봉사 수요처 개발
4.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
5. 사회봉사자 모집 및 지도관리
6. 사회봉사 장학생 선발
7. 사회봉사 장려 및 홍보
8. 그 밖에 필요한 사업 <개정 2018. 9. 12.>

제3조(조직) ① 사회봉사단에는 단장 1인과 교직원봉사부, 학생봉사부, 사회봉사지원부를 두며, 각 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다.

② 교직원봉사부는 교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, 학생봉사부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며, 사회봉사지원부는 사회봉사단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
③ 사회봉사단의 단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

④ 교직원봉사부장 및 학생봉사부장은 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사회봉사지원부장은 학생지원과장이 된다.

⑤ 사회봉사단에는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) 사회봉사단의 봉사활동은 학습봉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1. 학습봉사활동 : 교육과정에 의한 사회봉사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

2. 자원봉사활동 : 학점취득과 관계없이 실시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봉사활동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사회봉사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사회봉사 주요계획 수립

2. 사회봉사 주요사업
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8. 9. 12.>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 중 학생 또는 외부인사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9. 3. 20.>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사회봉사 교육과정 운영) 사회봉사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사회봉사 교과목은 매 학기 1학점으로 하고, 매 학년도 1학기 및 2학기에 개설한다.
2. 사회봉사 학점은 2학점까지 인정하며 학기당 수강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고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
3. 사회봉사교과목은 1학점당 기본강의 4시간, 봉사실습 24시간, 평가 2시간 이상으로 한다.
4. 사회봉사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기본 강의, 봉사실습 등을 봉사기관 확인서 및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P(Pass), F(Fail)로 평가한다.
5. 사회봉사실습은 교내봉사 및 교외봉사를 대상으로 한다.

제7조(포상 및 학적부 등재) ① 자원봉사자중 봉사활동이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는 포상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재학중 학교가 정하는 소정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학적부에 등재 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사회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(1999. 4. 1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916호, 2018.9.12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3. 20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